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14. . . (제 회)

의결사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문 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

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화(안 제12조제1항, 제13조)

○ 집배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함

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에 적용하는 직급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4)

○ 집배원의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 유사경력의 환산율을 조정(안 별표 2)

○ 채용 전에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의 유사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여 우수인력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진입을 유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미래창조과학부령 제　　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직원의 보수표 중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을 각각 “우정 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장 및 직원의 경력환산율표(제12조제2항관련)

구분	내용	환산율
1.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별정우체국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	10할
2.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할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 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할
3. 유사경력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102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107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전의 임시직·촉탁·잡급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1)외의 경력으로서 안전행정부가 인정하는 경력 (3)「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동일분야 경력 : 10할 - 비동일분야 : 8할. 다만, (2)의 경력은 5할

	(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을 제외한다. (7) 「재외공관고용원 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경력 : 10할 - 비동일분야 : 8할
	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및 별정우체국의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와 직원의 공제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8할
	라.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안전행정부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경찰공무원의 임용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7할 7할 7할 7할 5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당연 퇴직) ① (생 략)	제8조(당연 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당연 퇴직된다. <단서신설>	② ----------. 다만,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호봉의 획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집배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기능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호봉의 획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국장 및 사무원의 경우	제13조(승급) 호봉 간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집배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기능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연 락 처	(02) 2195 - 1161